

2023년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시책



장애인전화 1588-0420



“장애만 보면 능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편견없는 장애인 고용, 능력을 보면 장애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Korea Employment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사단법인
부산장애인총연합회
Busan Differently Abled Federation

디자인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3년 제32회 장애인고용 콘텐츠 공모전 포스터 디자인 수상작(최혜정)

* 19년 7월 1일 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기존 장애 1~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 4~6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으로 변경됨에 따라 장애정도과 장애등급을 함께 표기하고 있습니다.

| 주요시책명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금·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장애인 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3급 중복장애: 주장애가 3급이며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 - 소득인정액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2년도 선정기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가구: 1,220,000원 • 부부가구: 1,952,000원 <p>※접수 및 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20일 지급 (매월, 단위: 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계</th> <th>기초</th> <th>부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생계·의료 급여 수급자</td> <td>18~64세</td> <td>403,180</td> <td>323,180</td> <td>80,000</td> </tr> <tr> <td>65세이상</td> <td>403,180</td> <td></td> <td>403,180</td> </tr> <tr> <td rowspan="2">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td> <td>18~64세</td> <td>393,180</td> <td>323,180</td> <td>70,000</td> </tr> <tr> <td>65세이상</td> <td>70,000</td> <td></td> <td>70,000</td> </tr> <tr> <td rowspan="2">차상위 초과</td> <td>18~64세</td> <td>343,180</td> <td>323,180</td> <td>20,000</td> </tr> <tr> <td>65세이상</td> <td>40,000</td> <td></td> <td>40,000</td> </tr> </tbody> </table> <p>※만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 (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p> | 구분 | 계 | 기초 | 부가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 18~64세 | 403,180 | 323,180 | 80,000 | 65세이상 | 403,180 | | 403,180 |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 18~64세 | 393,180 | 323,180 | 70,000 | 65세이상 | 70,000 | | 70,000 | 차상위 초과 | 18~64세 | 343,180 | 323,180 | 20,000 | 65세이상 | 40,000 | | 40,000 |
| | | 구분 | 계 | 기초 | 부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 18~64세 | 403,180 | 323,180 | 8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5세이상 | 403,180 | | 403,1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 18~64세 | 393,180 | 323,180 | 7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5세이상 | 70,000 | | 7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상위 초과 | 18~64세 | 343,180 | 323,180 | 2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5세이상 | 40,000 | | 4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장애 수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장애등급이 3~6급인 장애인 <p>※접수 및 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1인당 월 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1인당 월 3만원 ■ 매월 20일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장애인 재활수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p>※접수 및 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재활수당: 1인당 월 3만원 ■ 매월 20일 지급 ※신청 절차 없이 지급조건 충족 시 직권 신청 후 서면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장애 아동 수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기존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경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기존 3~6급) <p>※접수 및 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동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계, 의료) 중증: 1인당 월 22만원 - 기초(주거, 교육, 차상위) 중증: 1인당 월 17만원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경증: 1인당 월 11만원 - 보장시설(생계, 의료) 중증: 1인당 월 9만원 - 보장시설(생계, 의료) 경증: 1인당 월 3만원 ■ 매월 20일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장애 아동 양육수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 <p>※접수 및 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동 양육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35개월: 월 200,000원 - 36~86개월 미만(취학 전): 월 100,000원 ■ 매월 25일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장애 아동입양 양육보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p>※접수 및 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장애아동: 월 627,000원 - 경증장애아동: 월 551,000원 ■ 매월 20일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자동차 사고 피해 가족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본인 및 가족으로 다음의 기준에 해당 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p>※접수 및 문의: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 051)324-2463~4</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사고 재활보조금 지원 - 월 220,000원(무상) ■ 65세 이상 노부모 피부양보조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220,000원(무상) ■ 생계를 같이 하는 18세 미만의 유자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금: 초등학교 25만원, 중학생 35만원, 고등학생 45만원 분기별 지급 - 생활자금대출: 무이자 월25만원, 자녀가 만30세 되는 달부터 상환 - 자립지원금: 보호자·후원자가 매월 일정액(10만원 이내)을 적립하면 국가가 월 7만원 한도에서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적립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요시책명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
| 보육·교육 | | |
| 8. 어린이집 우선입소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 장애 정도가 심한 형제·자매를 둔 영유아 ※온라인 신청시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우선입소 지원 - 입소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전체 어린이집에 대하여 입소대기 신청 (직장, 협동어린이집 제외) |
| 9. 장애아 보육료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예외)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만5세 이하만 해당)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3세~만8세까지만 해당) ※접수 및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영유아의 보육 지원 및 가족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육료 지원 ■ 지원단가 - 장애아반 편성 아동 : 월 559,000원 - 일반연령반 편성 장애아동 : 시·도지사가 고시한 수납 한도액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
| 10.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 어린이집을 1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의 취학 장애아동 ※접수 및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단가 - 장애아반 편성 아동 : 월 279,000원 - 일반연령반 편성 장애아동 : 시·도지사가 고시한 수납 한도액의 50% 지원 |
| 11. 여성 장애인 교육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여성 장애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교육 지원 - 상담·사례관리/역량강화교육/자조모임 ■ 수행기관 안내창구 -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 051)790-6400 - 부산여성장애인연대 ☎ 051)462-9669 |
| 12. 장애 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 경증장애 대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대학 특별지원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접수 및 문의 :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교육지원인력 : 대학 내 학습지원(강의·시험 대필 등)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 지원 ■ 전문교육지원인력 :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화면해설사 등에 의한 학습지원 ■ 보조기기 : 장애유형별 보조기기 지원 |
| 13. 장애인 정보화 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교육 : 등록 장애인 ※디지털배움터누리집(디지털배움터.kr)에서 수행기관 확인 및 온라인 신청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교육 : PC운용, QA운용, 생활활용, 멀티미디어 등 무료 교육 ■ 방문교육 : 컴퓨터기초, 인터넷 등 교육생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1:1 무료 교육 (총 20회, 1일 3시간씩 주3회 실시) |
| 14.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대상자(시각·청각·지체·자폐성·정서행동·의사소통·학습·건강·발달지체 장애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일반학교 교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학생 교수·학습 e러닝 콘텐츠, 특수교육 및 장애이해교육 관련 자료 제공 - 국립특수교육원(www.nise.go.kr) - 에듀에이블(www.eduable.net) |
| 15.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6세 ~ 만18세 미만의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 만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접수 및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시간 : 월 66시간의 바우처 제공 ■ 이용시간 : 월~토(9시~21시) 일일 최대 9시간, 일요일·공휴일 제외 ■ 서비스내용 : 취미, 여가, 자립준비, 자조활동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 ■ 본인부담금 없음 |

| 주요시책명 | 지원 대상 | | 지원 내용 |
|--|--|--|---|
| 의료·재활지원 | | | |
| 16. 장애인 의료비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 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장애인) <p>※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지원(비급여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차상위 14%,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및 약국 조제비는 지원하지 않음 |
| 17. 건강보험지역 가입자 보험료 경감 <small>※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에 신청</small>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
| | 산출 보험료 경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가입자 중 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3천5백만원 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 경감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 경감 |
| | 장기 요양보험료 경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때 30% 감면 |
| 18.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등록 장애인이 신규로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의무적 재판정·서비스 재판정이 아닌 직권재판정의 경우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지원 <p>※접수 및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자폐성·정신장애 : 40,000원 - 그 외의 장애 : 15,000원 ■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 심사결과가 장애정도 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 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진단서 발급비 지원 불가 |
| 19. 장애 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의무적 재판정·서비스 재판정이 아닌 직권재판정의 경우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지원 <p>※접수 및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0만원 지급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 이내인 경우 : 검사비 총액 ■ 심사결과가 장애정도 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 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검사비 지원 불가 |
| 20. 장애 아동 발달 재활 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기준 :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중복장애 인정)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 기타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6세 미만 아동은 발달재활 서비스 의뢰서(검사자료 포함)로 대체 가능 <p>※접수 및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17~25만원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 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 제공기관 현황 안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서비스기관 검색-제공기관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 |

| 주요시책명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
| 의료 · 재활지원 | | |
| 21. 언어 발달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기준 : 만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 장애유형 :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 · 청각 · 언어 · 지적 · 뇌병변 · 자폐성 등록 장애인(양쪽 장애인인 경우 우선 지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접수 및 문의 :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16~22만원의 언어재활 등 바우처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 · 청능 등 언어재활 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술 ·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이용한 지도 불가 ■ 제공기관 현황 안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서비스기관 검색-제공기관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 |
| 22. 우리아이 발달지원단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아동 ※접수 및 문의 :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우리아이 발달지원단 ☎ 051)790-6142~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전문적인 선별 ·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조기선별 및 지원사업 |
| 23.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가정 ※접수 및 문의 :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동 의료비(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소요 비용)를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 및 비급여 포함 |
| 24.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여성 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 사산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를 유 · 사산한 경우로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제외 ※접수 및 문의 :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유산, 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급 |
| 25.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검진 수검을 희망하는 등록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에서 제공되는 장애인 건강검진 보조 등의 서비스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준 1~3급)을 대상으로 지원되므로, 장애인 복지카드를 지참 필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건강검진, 암 검진 등 국가건강검진을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검진받을 수 있도록 장애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 ■ 수행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성모병원 ☎ 051)933-7672 - 부산의료원 ☎ 051)607-2061 - 연제일신병원 ☎ 051)860-5550 - 좋은삼선병원 ☎ 051)922-5800 |
| 26. 정신 건강 복지 센터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장애인과 가족 ■ 정신건강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모든 구민 ■ 정신건강증진을 필요로 하는 기관 ※전화상담 후 예약 필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건강증진사업 ■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 ■ 자살예방사업 ■ 정신보건환경조성사업 ※부산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 051)242-2575 강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 051)970-3418 금정구정신건강복지센터 ☎ 051)518-8700 기장군정신건강복지센터 ☎ 051)727-5386 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 051)626-4660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 051)911-4600 동래구정신건강복지센터 ☎ 051)507-7306 부산진구정신건강복지센터 ☎ 051)638-2662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 051)334-3200 사상구정신건강복지센터 ☎ 051)314-4101 사하구정신건강복지센터 ☎ 051)265-0512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 051)246-1981 수영구정신건강복지센터 ☎ 051)714-5681 연제구정신건강복지센터 ☎ 051)861-1914 영도구정신건강복지센터 ☎ 051)404-3379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 051)257-7057 해운대구정신건강복지센터 ☎ 051)741-3567 |

| 주요시책명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 | | | | | | | | | | |
|---------------------------------------|--|---|----|-----|------|-------------------|---------|----|------|---------|----|----------|---------|---------|
| 의료 · 재활지원 | | | | | | | | | | | | | | |
| 27. 장애인 치과 진료 센터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의원에서 치료받기 힘든 중증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동조절이 잘 되지 않는 중증 장애인의 치과 진료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전신마취 등 시행 ■ 치과치료가 필요한 모든 등록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뇌병변장애 중증 및 경증(1~6급) 뇌전증장애 중증 및 경증(1~5급) 정신장애 중증(1~3급) 지체장애 중증(1~3급) 지적장애 중증(1~3급) 자폐성장애 중증(1~3급)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은 치과영역 경증 장애인으로 구분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료비 지원 해당없음 ■ 부산의료원 장애인치과센터 ☎ 051)607-2241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료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 건강보험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 치과영역 경증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 부산장애인구강진료센터 ☎ 051)240-6800 ■ 경남장애인구강진료센터 ☎ 055)360-5400 ※ 장애인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 지참하여 방문 | | | | | | | | | | | | |
| 28. 취약 계층 장애인 보조 기기 교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부대상자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보조기기 필요(적격)로 판정된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유형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기, 언어, 지적, 자폐성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p>※접수 및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유형 및 교부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뇌병변 : 대체 입력 장치 - 심장 : 옥창예방 방식 및 매트리스 - 시각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 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 청각 : 신호장치, 진동시계, 헤드폰 - 지체·뇌병변 :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식사도구, 머그컵·유리컵·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훈련기, 목욕의자, 경사로, 이동변기,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 지지대, 환경 제어 장치, 지지대 및 손잡이, 장애인용 유모차,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의류 및 신발, 휠체어 액세서리, 침대 및 탈착식 침대 판/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 소변수집장치, 개인 비상 경보시스템, 독서용 탁자, 책상 및 독서대 -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 대화용장치 -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 : 기억 지원 보조기기 ■ 지원기준금액 초과시 자부담금 발생 | | | | | | | | | | | | |
| 29.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의료급여) 적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장애인 중 등록된 신체장애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기기 신청인 ■ 건강보험 지원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일부 품목 처방 생략) ② 보조기기 사전승인 신청 <p>※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이동식전동리프트·수동휠체어(활동형, 탈딩형, 리클라이닝형)만 해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기기 구입 전 공단에 처방전, 해당 검사 관련 서류와 함께 보조기기 급여 승인 신청서 제출 - 공단의 급여결정 통보서를 받은 경우 구입 후 지급청구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 대상자 : 보험급여대상 품목의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90%, 기준액 초과 시는 기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차상위는 최저금액의 전액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p style="text-align: center;"><적용대상 보조기기 및 기준액> *일부품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분류</th> <th style="width: 30%;">기준액</th> <th style="width: 40%;">내구연한</th> </tr> </thead> <tbody> <tr> <td>■ 지체·뇌병변 장애인용 지팡이</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년</td> </tr> <tr> <td>■ 목발</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년</td> </tr> <tr> <td>■ 의지·보조기</td> <td style="text-align: center;">유형별로 상이</td> <td style="text-align: center;">유형별로 상이</td> </tr> </tbody> </table> | 분류 | 기준액 | 내구연한 | ■ 지체·뇌병변 장애인용 지팡이 | 20,000원 | 2년 | ■ 목발 | 15,000원 | 2년 | ■ 의지·보조기 | 유형별로 상이 | 유형별로 상이 |
| 분류 | 기준액 | 내구연한 | | | | | | | | | | | | |
| ■ 지체·뇌병변 장애인용 지팡이 | 20,000원 | 2년 | | | | | | | | | | | | |
| ■ 목발 | 15,000원 | 2년 | | | | | | | | | | | | |
| ■ 의지·보조기 | 유형별로 상이 | 유형별로 상이 | | | | | | | | | | | | |

| 주요시책명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 | | | | |
|--|--|--|---|--|---|------------------------------|------------------------------|-------------------------------|
| 의료·재활지원 | | | | | | | | |
| <p>※ 신청기관 - 건강보험 : 관할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p> <p>- 의료급여 :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p> <p>※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p> <p>※ 국민건강 보험공단 ☎ 1577-1000</p> | <p>③ 보조기기 구입 - 일부 품목 공단에 등록된 품목 또는 등록된 업소에서만 구입 가능</p> <p>④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발급(일부 품목 검수 생략)</p> <p>⑤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급 청구 ※첨부서류 -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 - 보조기기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보조기기 유형별 상이) -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전표 -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p> <p>⑥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급</p> <p>⑦ 사후 점검</p> <p>■ 의료급여 지원절차 - 건강보험 지원절차와 동일하나 보조기기 구입 전 보장기관에 보조기기 지원신청을 하여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여부 판단 후 지원 결정이 되어야만 함</p> <p>■ 종별 변경 및 자격상실 등에 따른 처리 - 수급권자의 종별 변경(1종→2종 또는 2종→ 1종)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 상실(의료급여→ 건강보험), 전출입의 경우에는 보조기기 구입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p> | <p>분류</p> | <p>기준액</p> | <p>내구연한</p> | | | | |
| | <p>■ 시각장애인용 - 저시력 보조 안경 100,000원 3년 - 돋보기 100,000원 4년 - 망원경 100,000원 4년 - 콘택트렌즈 80,000원 3년 - 의안 620,000원 5년 - 흰지팡이 25,000원 0.5년</p> | <p>■ 보청기 1,310,000원 5년</p> | <p>■ 옥창예방방석 250,000원 3년</p> | <p>■ 맞춤형 교정용 신발 250,000원 만19세 이상 2년 만18세 이하 1년</p> | <p>■ 수동휠체어 - 일반형 480,000원 - 활동형 1,000,000원 5년 - 틸딩형,리클라이닝형 800,000원</p> | <p>■ 전동휠체어 2,090,000원 6년</p> | <p>■ 전동스쿠터 1,670,000원 6년</p> | <p>■ 소모품 전지 160,000원 1.5년</p> |
| | <p>30. 장애인 보조 기기 수리 센터 운영</p> | <p>■ 등록 장애인 중 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p> | <p>■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및 점검</p> <p>■ 보조기기 대여사업 및 사후관리 서비스 등 제공</p> <p>■ 지원기준(1인당 최대지원금 400,000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무료 (최대지원 금액 초과 시 본인부담금 발생) - 독거 장애인 : 40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 10% - 일반 장애인 : 40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 20%</p> <p>■ 권역별 운영기관 -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동구,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수영구) ☎ 051)790-6190 -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북구, 강서구, 사상구) ☎ 051)363-8257 - 금정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기장군) ☎ 051)582-3363 - 사하두바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구, 서구, 영도구, 사하구) ☎ 051)294-1282</p> | | | | | |
| | <p>31. 산소치료 (가정용· 휴대용) 기기 대여료 지원</p> | <p>■ 장애의 정도가 심한 호흡기 장애인 - 동맥혈가스 또는 산소포화도검사 결과, 기준 적합여부에 해당하는 경우</p> <p>■ '19.7.1. 이전 호흡기 장애 1급 또는 2급으로 확인되는 장애인 - 검사없이 내과, 결핵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p> <p>※접수 및 문의: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의료급여 : 시·군·구청</p> | <p>■ 처방전 발급 후 가정용 또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의 월 대여료 지원</p> <p>■ 기준 금액 - 가정용 : 월 120,000원 - 휴대용 : 월 200,000원 (15일 이내 대여 시 월 100,000원)</p> <p>■ 지급 금액 - 건강보험 : 기준/실대여 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차상위는 100%) 지원 - 의료급여 : 기준/실대여 금액 중 낮은 금액의 100% 지원</p> | | | | | |

| 주요시책명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
| 의료 · 재활지원 | | |
| 32.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가입자 중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에 해당하는 자 ※접수 및 문의 : 병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정특례 대상자는 특례기간동안 해당 질환으로 입원 · 외래진료 시 질환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 0~10% 부담 ■ 비급여 제외 ■ 적용기간 : 질환에 따라 상이 ■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
| 33. 희귀 ·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가입자 중 희귀질환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 ※접수 및 문의 : 보건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10%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 - 간병비 월 30만원 지급 -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 특수식이구입비 지원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https://helpline.kdca.go.kr |
| 34.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인 ※접수 및 문의 :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치료기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시 · 군 · 구에서 정함 |
| 세제혜택 | | |
| 35.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 (기존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장애인(시각장애인은 4급)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 존 · 비속(재혼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포함), 형제 ·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아래 자동차 중 1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최대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접수 및 문의 : 시 · 군 · 구청 세무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세(기존 등록세 포함) · 자동차세 면제 ■ 차량등록 후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또는 세대분리 시 면제된 취득세 추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 인정 시에는 추징 제외 ■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
| 36. 승용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전액 면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 존 ·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배기량 제한 없음) ※자동차 판매인에게 상담 및 자동차영업소로 신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 연도분 부과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음)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 표준에서 제외 |
| 37. 차량 구입 시 도시철도 차권 구입 면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아래 자동차 중 1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 소형화물자동차(2.5톤 미만) ※접수 및 문의 : 시 · 군 · 구청 차량등록팀 (자동차를 판매한 영업사원에게 의뢰하여 처리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철도차권 구입의무 면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의 거주자 해당) ■ 차량 등록 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여 면제신청 |
| 38. 소득세 공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장애인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12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가족(직계존 · 비속, 형제 · 자매 등)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
| 39. 장애인 의료비공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장애인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12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년도 의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

| 주요시책명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
| 세제혜택 | | |
| 40.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장애인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 12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
| 41. 장애인 보험가입 및 보험료 공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장애인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 12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료차별금지조항 명시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100만원 한도 ⇒ 15% 공제율 적용 |
| 42. 상속세 상속 공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장애인 ※ 접수 및 문의 : 세무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천만원에 상속 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곱한 금액을 공제 ※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 (1천만원 × 기대여명의 연수) |
| 43.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장애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 접수 및 문의 : 세무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해 그 이익을 지급받은 경우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미포함 ※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탁을 해지하거나, 만료된 경우. 단, 해지·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는 제외 -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신탁원본이 감소한 경우 |
| 44.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장애인 ※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용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 면제 |
| 45. 장애인 보조기기 부가 가치세 영세율 적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장애인 ※ 별도신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농아인협회의 구매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 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현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목발, 성인용보행기, 욕창예방물품,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 장치,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 |
| 46. 산업재산권 출원료 등 수수료 감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장애인 ※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 시 또는 등록 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실용시안·디자인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특허료·등록료 면제 ■ 특허·실용시안·디자인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 시 심판청구료 70% 감면 |

| 주요시책명 | 지원 대상 | | 지원 내용 | | | | | | |
|-----------------------------|---|--|---|----|-----|-----|-------------------|------------------|------------------|
| 서비스 | | | | | | | | | |
| 47. 장애인 활동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6세 ~ 만64세의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세 이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어 활동지원급여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활동지원 보전급여 신청 가능 -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도 활동지원 보전급여 신청 가능 <p>※접수 및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보조(신체활동·가사활동·사회활동 지원 등)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지원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지원급여(활동지원등급별 15구간 산정)+ 특별지원급여(출산, 자립준비, 보호자일시부재) ■ 서비스단가 및 본인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당 15,570원(야간, 공휴일 23,350원)/ 제공시간에 따라 단가 계산 - 수급자 무료, 차상위 2만원, 차상위 초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 | | | | | | |
| 48.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 돌봄 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8세 미만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 중인 가정 <p>※접수 및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 돌보미를 가정에 파견 ■ 아동 1인당 연 960시간 범위 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무료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시간당 4,740원 <p>※960시간 초과 시,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시간당 11,850원 전액 본인부담</p> | | | | | | |
| | 휴식 지원 프로그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동을 양육 중인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 우선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문화, 상담 및 치료, 자조모임, 정보제공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지원 ■ 비용 : 무료 ■ 수행기관 안내창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 051)790-6125 | | | | | | |
| 49.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8세 ~ 만64세의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종합조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판정받은 경우 이용 가능 <p>※접수 및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시간에 교육, 취미, 여가 활동 등 지역사회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우처(이용권) 지원 ■ 지원(인정)시간 <table border="1" data-bbox="791 1211 1337 1328"> <thead> <tr> <th>구분</th> <th>기본형</th> <th>확장형</th> </tr> </thead> <tbody> <tr> <td>기본 제공시간 (일일기준)</td> <td>132시간 (일 6시간)</td> <td>176시간 (일 8시간)</td> </tr> </tbody> </table> <p>※확장형 이용자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중복 이용시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 월 22시간 차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부담금 없음 | 구분 | 기본형 | 확장형 | 기본 제공시간 (일일기준) | 132시간 (일 6시간) | 176시간 (일 8시간) |
| 구분 | 기본형 | 확장형 | | | | | | | |
| 기본 제공시간 (일일기준) | 132시간 (일 6시간) | 176시간 (일 8시간) | | | | | | | |
| 50. 발달 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결정에 도움이 필요한 만 19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p>※접수 및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후견인 선임을 위해 가정법원 심판 청구시 소요되는 행정비용 1인당 최대 50만원 실비 지원 ■ 공공후견인 활동비용은 월 기준 1인 20만원, 2인 40만원, 3인 이상 50만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한 제한 없음) | | | | | | |
| 51. 발달 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p>※접수 및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개별/전체)서비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월 16만원 바우처 지원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월 3~4회, 회당 50~100분, 12개월간 제공 (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 | | | | | |

| 주요시책명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 | | | | | | | | | | | |
|---------------------------------|---|--|----|-----------------------|------------|----|------|----|------|------------|----|------|----|------|---|
| 서비스 | | | | | | | | | | | | | | | |
| 52. 발달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및 가족 ※사업수행기관에 신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휴식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캠프, 테마여행, 자유여행 중 선택 이용 ■ 1인당 지원금액(일정별 비용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일 75,000원, 1박2일 150,000원, 2박 3일 240,000원 ※수행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운대구장애인복지관 ☎ 051)521-5200 - (사)부산장애인부모회 ☎ 051)892-2003 | | | | | | | | | | | | | |
| 53.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 입소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등록 장애인 <table border="1" data-bbox="214 531 722 799"> <thead> <tr> <th>시설종류</th> <th>대상</th> <th>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1)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중증장애인 거주시설</td> <td>성인</td> <td>240점</td> </tr> <tr> <td>아동</td> <td>190점</td> </tr> <tr> <td rowspan="2">장애유형별 거주시설</td> <td>성인</td> <td>120점</td> </tr> <tr> <td>아동</td> <td>110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비입소이용자 : 종합조사 결과를 충족하고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입소 결정 - 소득조건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 ※접수 및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설종류 | 대상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1)점수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성인 | 240점 | 아동 | 190점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성인 | 120점 | 아동 | 110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시설 입소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상담치료, 사회적응 훈련 등) ■ 입소절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입소(이용) 가능 여부 확인 - 서비스 신청 및 접수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의뢰-의뢰접수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 조사결과 전송 - 서비스 결정 안내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와 관계없이 입소 가능 |
| 시설종류 | 대상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1)점수 | | | | | | | | | | | | | |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성인 | 240점 | | | | | | | | | | | | | |
| | 아동 | 190점 | | | | | | | | | | | | | |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성인 | 120점 | | | | | | | | | | | | | |
| | 아동 | 110점 | | | | | | | | | | | | | |
| 54. 실비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비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중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장애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비장애인거주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94,000원 지원 ※시·군·구에서 해당 시설에 지원 | | | | | | | | | | | | | |
| 55.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접수 및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에 주차가능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 | | | | | | | | | | | |
| 56.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지적장애인·정신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접수 및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이하의 공공 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 대상자 선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 종합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 | | | | | | | | | | | |
| 57. 저소득 장애인가정 주거편의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인 등록 장애인 가구 중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가구 ※접수 및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연초 신청접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턱제거, 경사로 설치 등의 환경개선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통해 편의증진 및 주거안전 확보 | | | | | | | | | | | | | |
| 58.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중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장애인 ※접수 및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에 화재·가스감지센서, 응급호출기, 활동감지기 등의 장비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119 자동신고 및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응급 상황 지원 | | | | | | | | | | | | | |

| 주요시책명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
| 서비스 | | |
| 59. 가사 · 간병 방문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65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단,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탈락한 경우)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법정보호세대인 한부모가정의 자녀 또는 손자·녀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접수 및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지원(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가능) ■ 장기입원사례관리자는 6개월 지원(연장불가) |
| 60.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9세 ~ 만64세의 등록 장애인 ※접수 및 문의 : 시·군·구청 및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온라인 신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이용시 1인당 매월 9만5천원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복수강좌) ■ 지원기간 : 12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기간에 매월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되며, 다음달로 이월하거나 현금으로 인출 불가 |
| 61. 무료 법률구조 제도 실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외국인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접수 및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 ☎ 132 - 인터넷상담 www.klac.or.kr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 사건 소송대리 (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 시 소송비용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 보험수수료 본인부담)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변호사 비용만 지원하며 인지대 등 소송비용은 본인부담 |
| 62. 법률 상담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을 받기 어려운 장애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무료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단, 소송 수행 및 법률문서 직접작성은 제외) ■ 이용시간 : 월~금(10시~17시) ■ 배치기관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수영구청 ☎ 051)610-4027 - 부산 해운대구청 ☎ 051)749-5689 - 부산광역시청 ☎ 051)888-3155 |
| 63. 장애인 운전 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 중 면허조건을 만족하며, 제1종 및 제2종 보통 면허 취득을 희망하거나 소지한 장애인 ※접수 및 문의 :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 02)901-1553 ■ 운전면허 취득에 관심이 있는 등록 장애인 ※접수 및 문의 : 부산국제장애인협회 장애인 운전재활센터 ☎ 051)469-3250 ■ 운전면허 취득에 관심이 있는 등록 장애인 ※접수 및 문의 : 남부운전면허시험장 장애인운전 지원센터 ☎ 051)610-808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보조기기가 장착된 차량이나 수어로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거주지까지 '찾아가는 운전 교육'을 무료로 제공 ■ 학과시험 강의 및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을 원스톱서비스로 무료 지원 ■ 1·2종 보통, 2종 원동기, 소형(오토바이), 1종 특수(소형견인(캠핑카), 대형견인, 구난차(렉카)), 1종 대형(버스) 운전면허 취득교육(학과교육, 장애기능교육, 도로주행교육)을 무료로 지원 |

| 주요시책명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서비스 | | | | | | | | | | | | | | | | | | | | | |
| 64. 중증 장애인 과태료 감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1~3급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공동명의 및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과태료 감경 불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경범위 : 과태료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자진납부시 추가 감경 가능 ■ 감경기간 :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종료 전까지 신청 가능 | | | | | | | | | | | | | | | | | | | |
| 일자리 · 용자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65. 장애인 의무 고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장애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소속 공무원 정원의 3.6% 이상 의무 고용(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포함) ■ 50인 이상 고용사업주 : 상시 근로자의 3.1% 이상 의무고용 ※ 의무고용률 미준수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상시 100인 이상 사업체) | | | | | | | | | | | | | | | | | | | |
| 66.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공공 : 3.6%, 민간 : 3.1%)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p>※ 접수 및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 지사</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정도 및 성별에 따라 고용장려금을 차등하여 지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경증장애인</th> <th colspan="2">중증장애인</th> </tr> <tr> <th>남성</th> <th>여성</th> <th>남성</th> <th>여성</th> </tr> </thead> <tbody> <tr> <td>2020년 ~ 2022년 발생분</td> <td>30만원</td> <td>45만원</td> <td>60만원</td> <td>80만원</td> </tr> <tr> <td>2023년 발생분 부터</td> <td>35만원</td> <td>50만원</td> <td>70만원</td> <td>9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급단가와 월 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로 지원</p> | 구분 | 경증장애인 | | 중증장애인 |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2020년 ~ 2022년 발생분 | 30만원 | 45만원 | 60만원 | 80만원 | 2023년 발생분 부터 | 35만원 | 50만원 | 70만원 | 90만원 |
| 구분 | 경증장애인 | | | 중증장애인 | | | | | | | | | | | | | | | | | |
|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 | | | | | | | | | | | | | | | |
| 2020년 ~ 2022년 발생분 | 30만원 | 45만원 | 60만원 | 80만원 | | | | | | | | | | | | | | | | | |
| 2023년 발생분 부터 | 35만원 | 50만원 | 70만원 | 90만원 | | | | | | | | | | | | | | | | | |
| 67. 장애인 표준 사업장 설립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 운영하거나 설립 하려는 사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을 설립 ·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장애인표준사업장 융자금 또는 무상지원금 지급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주 등은 신청할 수 없음 <p>※ 접수 및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 지사</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 : 장애인 10명 이상,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 이상(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차등 적용) 고용/편의시설을 설치/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 지원금 한도 : 신규 장애인고용인원에 따라 최고 10억원까지 지원 ■ 지원금 용도 :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 구입 · 개선비, 출퇴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 등 <p>※ 고용의무이행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부동산근저당을 공단에 제공해야 함</p> | | | | | | | | | | | | | | | | | | | |
| 68. 장애인 고용 시설 자금 용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p>※ 접수 및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 지사</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설치 · 구입 · 수리비용, 생산라인 조정 비용, 출퇴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 시설비용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한도 : 사업주당 15억원 이내 (장애인 1인당 1억원, 고용의무 인원의 25% 중증 고용조건) - 대출금리 : 대출금리에서 이차차액 보전금리(연5%)를 차감한 금리를 부담 - 용자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 | | | | | | | | | | | | | | | | | |

| 주요시책명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 |
|----------------------------|--|---|---|---|
| 일자리 · 융자지원 | | | | |
| 69. 장애인 시설 장비 무상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p>※접수 및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 지사</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한도 : 사업주당 3억원 이내(장애인근로자 1인당 1천만원, 중증장애인은 1천5백만원) | 지원범위 | 지원조건 |
| | |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 또는 법 시행 규칙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의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구입비용(최소 10인 이상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함) | 1회당 2천만원 한도 (20명 이상인 경우 4천만원 한도) |
| |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편의시설의 설치 · 구입 · 수리비용 | 소요비용이 1천만원 이하 시 전액지원 1천만원 초과 시 1천만원+초과 금액의 2/3 지원 | |
| | | 재택근무에 필요한 작업 장비의 설치 · 구입 · 수리비 | 사업주당 3천만원 한도 | |
| 70. 보조공학 기기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근로자 대상) ■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장애인 사업주로서 장애인을 고용하였거나 3개월 이내 고용하려는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 ■ 장애인 공무원 <p>※접수 및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 지사</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보조공학 기기,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비용 지원 ■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한도 지원 <무상지원, 고용유지조건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공학기기 구입일(맞춤형 보조공학기기는 공단의 구입 결정일)로부터 2년간 고용 또는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함 <p>※2024년부터는 보조공학기기 구입 · 대여 및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나머지 10%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함</p> | | |
| 71.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장애인 근로자 혹은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는 제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8시간, 주 40시간 한도 내 지원 ■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 ■ 1년간 서비스를 지원하며, 종료 후 재신청 가능 | | |
| 72. 장애인 일자리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8세 이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 (단,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장애인) <p>※접수 및 문의 :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당해년도 11~12월, 다음 해 참여자 공개 모집)</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 일자리유형 및 직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시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도우미,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복지 서비스 지원요원, 직업재활시설 지원요원 - 복지일자리(참여형, 특수교육-복지연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보조, 도서관 사서보조, 우편물 분류 등 직업능력을 반영한 맞춤형 직무 - 특화형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 | |

| 주요시책명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
| 일자리·용자지원 | | |
| 73.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유형 : 취업을 희망하는 만18세 이상 구직 장애인 ■ 2유형 : 중위소득 60% 이하의 취업을 희망하는 만18세 이상 구직 장애인(단, 만69세를 초과하는 경우 상담 및 평가를 통해 참여여부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중단일 1년 6개월, 기간만료(미취업)일 1년, 취(창)업일 1년 이후 재참여 가능 ※접수 및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 ■ 지원내용 : - 1단계(상담 및 취업활동 계획) - 2단계(취업역량 강화) - 3단계(고용 안정 및 유지) ※ 수당은 일정한 과정 참여를 전제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 |
| 74. 장애인 예비창업자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자 (사업성 평가를 통해 대상 선정) ※접수 및 문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부산지역센터 ☎ 051)329-823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창업교육 - 점포/사업화 지원 -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 |
| 75.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 센터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미만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 예비창업자 (사업성 평가를 통해 대상 선정) ※접수 및 문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부산지역센터 ☎ 051)329-823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센터 입주지원 - 수출지원 - 시제품 제작지원 - MAS 및 입찰컨설팅 - 경영환경개선 자금지원 - 1인 장애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 - 기술인증 및 마케팅지원 |
| 76. 부산광역시 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장애인 ■ 장애인 고용 희망 기업체 ■ 장애인일자리기관 ※접수 및 문의 : 부산광역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 051)465-194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인정보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신규직종 개발 및 장애인일자리 창출 ■ 장애인일자리 플랫폼 네트워크 구축·운영 ※인터넷상담 : https://busanjob4u.net |
| 77.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능력이 낮거나, 능력은 있으나 일반고용으로는 취업이 어려운 등록 장애인 ※각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별 문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자립을 도모 ■ 이용절차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청 및 접수 → 상담 → 직업능력평가 → 장애인근로자 선정 ■ 2023.4월 기준 부산시 내 총 43개소 운영 |
| 78. 장애인 생상품 판매 시설 운영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부산장애인생상품판매시설 ☎ 051)852-025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 지역 : 시·도당 1개소 (17개 지역) |
| 79.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년(만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자영업자 관련 대출자금,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여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생활계좌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용자 불가 ※접수 및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인 자 ■ 담보대출 : 담보 범위 내 5,000만원 이하 ■ 대여기관 : 국민은행 ■ 대여이자 : 21년 2분기 이후 신규자부터 최고 연 2%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 주요시책명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
| 공공요금 감면 | | |
| 80.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공공시설 요금 감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 공연장 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장요금 무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비 차원의 시설 이용료 등은 자체규정에 따라 감면 가능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제외) 및 공공체육 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
| 81.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 장애인 및 보호자 1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TX, SRT, I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경증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TX, SRT, ITX 새마을호 : 30% 할인 (토·일, 공휴일 제외)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
| <p>◆ 장애인교통복지카드 전국 지하철 무임태그 승차 가능</p> <p>* 23.4.1. 이후 신청하는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은 모두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로 발급됨</p> <p>* 금융카드형 소유자 및 신분증형 소유자 중 교통복지카드 발급 희망자는 23.4.1.부터 발급 신청 가능</p> <p>* 신청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 |
| 82.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기 소유의 자동차에 승차하여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를 제시한 등록 장애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시간 내 주차요금 전액 면제 - 1시간 초과, 1일 주차 및 월 주차의 경우에는 50% 할인 |
| 83. 유선 통신 요금 감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장애인(1회선 지원)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접수 및 문의 : 해당 통신회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내통화료 월 50% 감면 ■ 시외통화료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감면 ■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 :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자동연결은 요금부과)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외전화와 인터넷전화 서비스는 서로 중복 감면 없음 |
| 84. 이동 통신 요금 감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접수 및 문의 : 해당 통신회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선 지원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35%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 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
| 85. 시각·청각 장애인용 TV수신료 면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청각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의 수상기 ※ 접수 및 문의 : 관할 한전지사,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각·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 주요시책명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
| 공공요금 감면 | | |
| 86. 시각·청각 장애인용 TV (방송수신기) 무료 보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청각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정도, 연령 등 우선보급 적격기준에 따라 선정 후 보급 ※접수 및 문의 : 시청자미디어재단 (☎ 1688-4596)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1대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수신기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수신기 ※2023년 신청기간은 5월 2일(월) ~ 5월 26일(금) |
| 87. 장애인 방송 시청자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청각장애인 ■ 발달장애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 수어, 화면 해설방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방송사업자(지상파, SO, PP, 종편, 위성 등)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 EBS 장애인교육방송물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청각장애 학생을 위해 EBS교육방송물을 자막, 화면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웹을 통해 지원(http://free.ebs.co.kr) ■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 제작된 영상물을 '알기 쉬운 자막, 음성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보급 |
| 88. 항공요금 할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요금 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항공사에서 자율적으로 할인을 실시하는 제도임 ※항공권 구입 후 항공편 수속 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사항 : 국내선 기준, 중증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항공 (중증 및 기존1~4급) 50% 할인, (경증 및 기존5~6급) 30% 할인 ☎1588-2001 - 아시아나항공 (중증) 50% 할인, (경증) 30% 할인 ☎1588-8000 - 에어부산 (중증/중증 소아) 30% 할인/50% 할인, (경증/소경증 소아·중증 소아의 동반보호자) 10% 할인/30% 할인 ☎1666-3060 - 진에어 (중증 및 기존1~4급) 40% 할인, (경증 및 기존 5~6급) 할인없음 ☎1600-6200 - 제주항공 (중증 및 기존1~4급) 40% 할인 ☎1599-1500 - 티웨이항공 (중증) 50% 할인, (경증) 할인없음 ☎1688-8686 ※모든 항공사 할인은 항공사 정상운임 기준 할인이며, 이중 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장애등급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19.7월 이전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자에 한함 |
| 89. 연안 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 장애인 : 50% 할인 (기존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동반 할인) ■ 경증장애인 : 20% 할인(일부 선사만 해당) ※선사별 개별 운송약관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할인율은 각 여객선 회사에 문의 |
| 90.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용)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차로 : 한국도로공사에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이 일치하고,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소지한 등록 장애인이 탑승하여 카드를 제시할 때 통행료 할인 |

| 주요시책명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
| 공공요금 감면 | | |
| 90.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용2 또는 RV) 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용)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 (승합)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차 - (화물)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p>※경차, 영업용차량(개인택시, 용달 등), 대여사업 사업용 차량(렌트카), 법인차량은 제외</p> <p>※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p> <p>※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국도로공사 지역 본부 및 지사, 거점영업소</p> | <p>■ 하이패스차로(감면단말기) : 한국도로공사에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이 일치하고, 지문정보가 입력된 감면단말기를 장착하여 하이패스카드(선불 또는 후불)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한 후 출발 전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 인식기에 지문인증을 하면 하이패스 차로의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p> <p>* 지문인증 시 유효기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시 재인증 필요</p> <p>* 장애인전용 하이패스 단말기 판매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엠피온 ☎ 1544-8202 - 휴먼케어 ☎ 1688-3017 - 온라인 구매 |

◆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 신청

① 한국도로공사에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이 일치하고 ②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에 등록 후 ③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에 등록된 일반(감면)단말기에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고, 등록된 휴대폰을 소지 후 ④ 고소도로 하이패스 차로의 출구를 통과할 때 휴대폰의 위치정보(통신사 기지국)로 장애인 탑승여부를 확인하여 통행료 할인

* 신청방법

- 온라인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www.hipass.co.kr)
- 오프라인 행정복지센터, 보건지청, 한국도로공사 요금소 사무실 (‘만 14세미만 아동’ 또는 ‘만 18세미만 휴대폰 미보유아동’은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신청 가능)

* 감면방법

- 통합A형(선불 통합복지카드) : 고속도로 통행료 차감 후, 감면된 금액만큼 등록된 계좌로 익월 환급
- 통합B형(후불 통합복지카드) : 고속도로 원 통행료에서 감면금액이 차감된 금액을 익월 청구

* 지자체 유료도로 추후 적용 예정

| | | | |
|----------------------------|---|---|---|
| 91. 장애인 자동차 시내유료 도로 통행료 감면 | <p>■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 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용 차량은 제외 <p>※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 필수 및 관련 증명서 제시</p> | <p>■ 전액면제</p> <p>광안대로,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을숙도대교</p> | <p>■ 50% 감면</p> <p>거가대교, 부산항대교, 산성터널, 천마산터널</p> |
| | | <p>※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p> | <p>※장애인통합복지카드 제시</p> |
| 92.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 <p>■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등 제외 <p>※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 확인 및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p> | <p>■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30~5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장애인 : 50% - 경증장애인 : 30% <p>*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검사(17,000~29,000원) - 종합검사(48,000~65,000원) <p>■ 검사수수료할인은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만 가능(일반검사소 아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하검사소 ☎ 051)204-9536 - 주례검사소 ☎ 051)324-1431 - 해운대검사소 ☎ 051)781-7570 <p>※2020.1월부터 자동차검사 전면예약제 시행 www.cyberts.kr/yeyak</p> | |
| 93. 전기요금 감면 | <p>■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정</p> <p>※접수 및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 전력공사 (☎ 123)</p> | <p>■ 전기요금 정액 감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름철(6~8월) : 월 20,000원 한도 - 기타 계절 : 월 16,000원 한도 | |

| 주요시책명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
| 공공요금 감면 | | |
| 94. 도시가스 요금 감면 |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접수 및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산도시가스 사업소 (☎ 1544-0009) | ■ 취사난방용 요금 감면 - 동절기(12~3월) : 36,000원 - 동절기제외(4~11월) : 9,900원 ■ 취사용 요금감면 : 1,680원 |
| 95. 상·하수도 요금 감면 |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시각장애인의 경우 장애 정도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을 포함) 세대주 및 그 배우자(단, 차상위계층은 세대원까지 가능) ※ 접수 및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산상수도사업본부 (☎ 120) | ■ 상수도 사용량 10t(7,200원), 하수도(4,500원), 물이용부담금(1,510원) 감면 (총 13,210원) |
| 지역사회 복지사업 | | |
| 96. 장애인 복지관 운영 | ■ 등록 장애인과 그 가족 ※전화 및 내방을 통해 이용 신청과 상담 가능 | ■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사업 등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 051)790-6100 부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 051)338-0017 부산뇌병변복지관 ☎ 051)333-3888 나사함발달장애인복지관 ☎ 051)627-8521 금정구장애인복지관 ☎ 051)523-0100 기장장애인복지관 ☎ 051)727-3088 남구장애인복지관 ☎ 051)626-6990 동구장애인복지관 ☎ 051)469-9756 동래구장애인복지관 ☎ 051)522-1650 부산진구장애인복지관 ☎ 051)808-8190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 ☎ 051)362-7755 사상구장애인복지관 ☎ 051)302-5533 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 ☎ 051)262-2461 서구장애인복지관 ☎ 051)242-3930 수영구장애인복지관 ☎ 051)717-0290 영도구장애인복지관 ☎ 051)403-6060 해운대구장애인복지관 ☎ 051)521-5200 |
| 97.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 운영 | ■ 등록 장애인 ※해당 주간보호센터로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 ■ 재가장애인을 낮동안 보호하며, 재활 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통합정보시스템 www.bsrehab.or.kr |
| 98. 수어 통역 센터 운영 | ■ 청각·언어장애인 ■ 청각·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관공서 및 개인 | ■ 생활 전반에서 의사소통의 장애를 받지 않도록 수어통역서비스 및 상담서비스 지원 ■ 수어교육 및 통역인양성 ※부산수어통역센터 ☎ 051)635-3746 ※동부산수어통역센터 ☎ 051)513-6350 ※북부산수어통역센터 ☎ 051)337-3940 ※사하구수어통역센터 ☎ 051)203-2006 ※서구수어통역센터 ☎ 051)244-9770 ※수영구수어통역센터 ☎ 051)759-9344 ※해운대구수어통역센터 ☎ 051)747-5177 |

| 주요시책명 | 지원 대상 | | 지원 내용 | | | |
|---------------------------|--|----------------------|---|------|------------------------------------|------|
| 지역사회 복지사업 | | | | | | |
| 99. 부산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 센터 운영 | ■ 등록 시각장애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출, 출·퇴근 보조, 장보기, 민원업무 보조, 병원안내, 배송서비스 및 나들이지원 등 ■ 이용료 : 10km 2,000원, 700m당 100원 (70m 초과 시 10원) ■ 결제방식 : 카드결제 ■ 차량예약 및 이용문의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 051)464-3292 | | | |
| 100. 장애인 스포츠 센터 운영 | ■ 등록 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기존 1~3급)의 보호자 1명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회복활동 지원 (수영, 헬스, 농구 등 센터별 프로그램 상이) ■ 이용료 : 장애인 50% 감면 - 장애인복지카드 제시 ■ 장애인 스포츠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 051)503-6363 - 부산한마음스포츠센터 ☎ 051)709-0700 - 서부산권장애인스포츠센터 ☎ 051)203-7780 | | | |
| 101. 여성 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 육아도우미 지원 | ■ 만9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와 가사활동의 어려움이 있는 여성장애인에게 도우미를 파견하여 불편해소 지원 ■ 이용료 : 무료 ■ 수행기관 안내창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 051)790-6112 | | | |
| | 가사도우미 지원 | ■ 저소득 및 독거 여성장애인 | | | | |
| 102. 중증 장애인 특별교통 지원 차량 운영 | ■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지체·뇌병변·신장·청각(평형)장애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를 무료로 운행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 지원 ■ 수행기관 안내창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장애인총연합회 ☎ 051)863-0382 - 부산지체장애인단체협의회 ☎ 051)465-9055 - 부산산업재해장애인협회 ☎ 051)807-0091 | | | |
| 103. 장애인 콜택시 두리발 자비콜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상 중증장애인(기존1~3급), 만65세 이상 노약자로 휠체어 사용자이면서 장기요양인정서(1~3급)제출자 ■ 일시적인 장애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 (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요금 : 중형택시요금의 35% 수준 (기본 5Km 1,800원, 이후 422m·102초당 100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리발(휠체어 중증 장애인-기존1~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유형 : 지체, 뇌병변, 시각, 신장, (보호자 동반시)뇌전증 * 지체장애(상지)의 경우 : 장애정도결정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 시 이용가능 - 187대 보유 ☎ 051)466-8800 ■ 자비콜(비휠체어 중증장애인-기존1~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유형 : 지체, 뇌병변, 시각, 신장, 심장, 지적, 자폐 -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식 교통카드 결제가능 (현금결제 허용 안함) - 1,000대 보유 ☎ 051)583-8000 | | | |
| 104. 장애인 저상 버스 운영 | ■ 휠체어 사용 장애인 | | 버스번호 | 운영대수 | 버스번호 | 운영대수 |
| | | | 111-1, 155, 307 | 1대 | 20, 52, 181 | 10대 |
| | | | 7, 111, 182 | 2대 | 27, 39, 57, 63, 127, 148, 508 | 11대 |
| | | | 5-1, 10, 36, 40, 71, 100, 128-1, 184 | 3대 | 8, 24, 67, 83, 85, 113, 138, 148-1 | 12대 |
| | | | 11, 82, 123, 133, 300, 302, 506 | 4대 | 49, 68, 96, 167 | 13대 |

| 주요시책명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 | |
|--|---|---|-------------------------------|----------------------|----------|
| 지역사회 복지사업 | | | | | |
| 104. 장애인 저상 버스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상버스 :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탄 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오를 수 있도록 버스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 대신 경사판을 설치 <p>※장애인 요금 감면이 없으므로 버스 요금 지불</p> | 버스번호 | 운영대수 | 버스번호 | 운영대수 |
| | | 9, 33-1, 42, 55, 83-1, 105, 115, 138-1, 168 | 5대 | 108 | 14대 |
| | | 6, 26, 44, 59, 100-1, 183, 189-1 | 6대 | 41, 50, 80, 107, 110 | 15대 |
| | | 15, 99, 124, 188, 189, 131 | 7대 | 110-1, 129-1 | 17대 |
| | | 33, 126 | 8대 | 54 | 18대 |
| | | 30, 101, 179 | 9대 | 31, 51 | 19대 |
| | | | | 77, 141 | 21대 |
| | 62 | 24대 | | | |
| | 169 | 25대 | | | |
| | 81 | 26대 | | | |
| ※2022.12.31 기준 총 86개 노선 785대 운행 | | | | | |
| 105. 장애인 자동차 무료대여 (초록여행) ※부산장애인 총연합회 ☎ 051) 987-4943 대표전화 1670-4943 (내선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과 가족, 친구 등과 함께 원하는 곳으로 직접 운전하며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탑재가 가능한 4세대 카니발차량을 운영하는 사업 ■ 사단법인 그린라이트에서 기아와 함께 장애인 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 전국 6개 권역에서 모두 이용 가능(서울, 부산, 광주, 대전, 강원, 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www.greentrip.kr - 홈투홈서비스 : 차량을 무료로 집(원하는 곳) 까지 가져다 드리고, 반납할 때 집(원하는 곳) 에서 반납할 수 있음(P등급 무료/ V등급 편도 10,000원/ G등급 유료) - 1달에 1회 신청 가능, 1일에서 최대 3일까지 대여가능하며, 1년 사용일수에서 차감 - 초록 등급에 따라 매년 6일 ~ 10일 사용 가능 | 구분 | 예약 신청일 | 등급 | 연간사용 가능일 |
| | | 휠체어 사용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1) 매월 1일~7일 2) 매월 19일~말일 | Platinum | 10일 |
| | | 휠체어 미사용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1) 매월 8일~14일 2) 매월 19일~말일 | Vip | 8일 |
| | | 그 외 모든 등록 장애인 | 1) 매월 15일~18일 2) 매월 19일~말일 | Gold | 6일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세대 카니발 2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호차 : 5인승(핸드컨트롤러, 전동식 회전시트, 트랙커 장착)[1종보통 이상 운전가능] - 2호차 : 11인승(핸드컨트롤러, 전동식 회전시트 장착)[1종보통 이상 운전가능] <p>※초록여행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예약하여 이용 가능</p> | | | | | |
| 106. 장애인 전동휠체어 무료 대여 (휠세어) ※부산장애인 총연합회 ☎ 051) 987-7988 대표전화 1670-7988 (내선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동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장애인 분들에게 여행이나 출장시 전동화 키트를 무상으로 대여 ■ 사단법인 그린라이트와 현대자동차그룹이 손잡고 운영하는 사업이며 서울권역(KTX광명역, 김포공항, 그린라이트-가산디지털 단지역 인근, 부산 권역(부산역, 김해공항,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제주권역(제주국제공항 1층 휠세어존 부스), 경주권역(보문단지 내)에서 직접 대여 및 회수 가능 - 홈페이지 http://www.wheelshare.kr - 1회 대여 시 최대 10일(해외는 15일) 대여가능, 1년 총 사용일수 20일 사용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드라이브(위치형, 컨트롤러형), 토도 드라이브, 접이식 전동휠 보호자 조작형키트 ■ 부산지역 내에서만 원하는 장소(주택, 직장)에 직접 배송 및 회수 가능 <p>※휠세어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예약하여 이용 가능</p> | | | |

| 주요시책명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
| 지역사회 복지사업 | | |
| 107. 이동 목욕 차량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 재가장애인 또는 장기 외병중인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가족의 중증(기존1~3급) 재가장애인 (우선순위) - 스스로 목욕을 할 수 없는 저소득장애인 (2순위) - 사례회의를 통해 서비스추천을 받은 장애인 (3순위) - 장기 외병중인 무의탁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 보험 등급 외 판정자 (3순위) <p>※만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대상 제외</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인·운전기사·목욕봉사자가 한 팀이 되어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무료로 목욕서비스 제공 ■ 권역별 서비스제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장애인총연합회 ☎ 051)863-0650 (관할구: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사하구, 수영구, 해운대구) - 부산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 ☎ 051)465-7064 (관할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서구, 연제구, 중구) - 와치종합사회복지관 ☎ 051)403-4200 (관할구: 영도구) |
| 108. 장애인 전용전화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장애인 및 가족 <p>☎ 1588-0420</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어디서나 장애인 관련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관련 정보제공, 고충상담, 관련기관 연계 등 ■ 이용시간 : 월~금 (09시~18시) |
| 109. 장애인 결혼상담소 「내마음의 보석찾기」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적령기의 미혼 남·녀 장애인 <p>※부산장애인총연합회 결혼상담소 ☎ 051)868-6004</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결혼상담소 「내 마음의 보석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의 교실(결혼강좌), 사랑의 문화생활, 만남주선(상담지도), 계절여행(위대한 만남), 합동결혼식 등 운영 ※홈페이지 : www.iwedding.or.kr |
| 110. 산재 장애인 상담 센터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재재해장애인 및 산재가족 <p>※부산광역시산재재해장애인협회 ☎ 051)807-0091</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활동(심리·동료·가족·법률·재활 상담) ■ 사회적응프로그램 및 산재보상보험법 교육 등 ■ 이용시간 : 월~금(09시~18시) |
| 111.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센터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지적장애인과 가족 <p>※부산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 051)506-5024</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장애인에 대한 상담지원 ■ 지적장애인의 자기권리주장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 ■ 지적장애인 부모 및 종사자 교육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
| 112. 장애인 가족지원 센터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장애인의 부모 및 가족 <p>※부산광역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 051)892-2014</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및 사례관리 - 동료 상담가 양성 및 파견 ■ 가족역량강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가족교육 - 자조모임 지원 - 가족휴식지원 |
| 113. 장애인 재활지원 센터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장애인 및 가족, 관련 전문가 <p>※부산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 ☎ 051)465-7064</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과 가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격차해소지원사업 : 정보제공 및 상담, 부산장애인정보화대제전(예선), 전국장애인 정보화대제전(본선) - 인권·교육지원사업 : 인권교실, 정보화교육 - 생활·문화지원사업 : PC보급 및 방문A/S, 정보요원단운영, 두드림지원사업 등 ■ 전문가와 지역사회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와 종사자 교육지원사업 :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종사자교육 - 지역사회통합지원사업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용 장애인 대상 만족도 조사 |

| 주요시책명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
| 지역사회 복지사업 | | |
| 114. 발달 장애인 지원 센터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 자폐성 장애인) 및 가족 ※부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 051)714-736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상담 - 개인별지원계획 - 권리구제 - 공공후견 - 주간활동서비스 - 부모교육 - 가족휴식지원사업 |
| 115. 부산광역시 지역장애인 보건의료 센터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 · 의료 · 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재가장애인 ■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퇴원(예비) 장애인 ■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 및 교육이 필요한 여성 장애인 ※부산광역시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051)240-248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사업 ■ 여성장애인 모성보건 사업 ■ 장애인 및 보건의료인력 교육 사업 ■ 건강검진, 진료, 재활 등 의료서비스 연계 사업 |
| 116. 편의시설 설치 시민추진단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업무 위탁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의시설에 관심을 가진 사람을 요원으로 위촉하여 무장애 공간 구현 추진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자 신고 등의 활동 수행 ※부산지체장애인단체협의회 ☎ 051)465-905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안내 ■ 편의시설 실태조사 지원 ■ 시설주관기관에 의견제시 등 |
| 117.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 센터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대행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 현장 조사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편의시설확충과 장애인의 이동성 및 접근권을 확보함 ※부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 051)465-885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 편의증진법을 토대로 관련 민원 처리 ■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참여 ■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등 |
| 118. 장애인 자립 생활 센터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장애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권익옹호,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등을 통한 자립생활 및 역량강화 도모 ※가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51)971-5933 금정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51)582-3334 기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51)724-0332 동래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51)558-0717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51)338-2287 부산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51)900-6670 사랑샘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51)525-2678 사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51)312-5559 사하두바퀴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51)294-1282 삶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51)818-3435 서구한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51)253-7707 수영구행복한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51)759-7781 연제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51)507-9601 수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70)4699-2894 영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51)403-9280 중구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51)465-5510 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51)462-9977 함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51)627-0311 해운대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51)704-7707 |

| 주요시책명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
| 지역사회 복지사업 | | |
| 119. 부산광역시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또는 미등록 장애인, 장애가 의심되는 자 중 신체적·정서적·경제적·성적 등의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 ※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 051)715-8295~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학대 사건 지원 - 피해장애인 피해회복 지원 및 사후관리 - 장애인학대예방관련 교육 및 홍보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활동 ■ 장애인학대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1644-8295(평일 09-18시) ☎ 112(야간, 평일 18시 이후, 휴일) ※ 홈페이지 : www.bsaapd.or.kr |
| 법률 | | |
| 120.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관련 과태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4항 누구든지 제 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에 의거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 ※과태료 : 10만원 부과 ■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제9조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과태료 : 50만원 부과 | |
| 121. 장애인 차별 금지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2008.4.11 시행) ■ 목적 :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구현 ■ 차별금지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자 -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 :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의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 -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정당한 사용 : 보조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차별하는 행위 ■ 차별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차별 :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 간접차별 :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광고에 의한 차별 :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경우 | |
| 122. 권리 구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행위 발생 시 법적 구제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권위원회 : 진정 → 조사 → 시정권고 - 법무부 : 시정명령 → 과태료 및 징역 ■ 부과 대상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벌금 :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고의성·반복성)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 국가인권위원회 ☎ 국번없이 1331 (휴대폰의 경우 지역번호 입력) | |

| 부산장애인총연합회 회원단체 |

| 단체명 | 대표자 | 주소 | 전화 | 팩스 |
|------------------------|-----|---|----------|---------------|
| 부산장애인총연합회 | 조창용 | 동구 중앙대로196번길 12-3, 9층 (초량동, 부산장애인종합회관) | 863-0650 | 866-0651 |
| 부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 서용기 | 동구 중앙대로196번길 12-3, 8층 | 465-8857 | 465-9058 |
| 부산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 김복명 | 동구 중앙대로320번길 4, 3층 | 462-3292 | 462-3290 |
| 한국농아인협회 부산광역시협회 | 김경대 | 연제구 월드컵대로 21, 5층 | 635-3746 | 637-4154 |
| 부산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 | 박희동 | 동구 중앙대로196번길 12-3, 6층 | 506-5024 | 506-5059 |
| 부산광역시신장장애인협회 | 안규봉 | 동구 중앙대로196번길 12-3, 10층 | 808-3566 | 050-4926-0090 |
| 부산광역시 정신건강복지협회 | 이이현 | 동구 중앙대로196번길 12-3, 4층 | 646-7460 | 642-2776 |
| 부산심장장애인협회 | 김성득 | 동구 중앙대로196번길 12-3, 6층 | 853-8885 | 853-7885 |
| 부산광역시16개구군 장애인법인연합회 | 신천명 | 동구 중앙대로196번길 12-3, 7층 | 552-1597 | 552-1599 |
| 부산지체장애인단체협의회 | 유영호 | 동구 중앙대로196번길 12-3, 5층 | 465-9055 | 465-9066 |
| 부산장애인부모회 | 도우경 | 동구 중앙대로196번길 12-3, 6층 | 892-2003 | 892-6683 |
| 부산여성장애인연대 | 장향숙 | 동구 중앙대로196번길 12-3, 4층 | 517-9669 | 583-1996 |
| 부산척수장애인협회 | 최필순 | 동래구 반송로 327 | 528-8269 | 528-8270 |
| 부산광역시 산업재해장애인협회 | 안성준 | 동구 중앙대로196번길 12-3, 7층 | 807-0091 | 807-0069 |
| 대한안마사협회 부산지부 | 이남구 | 중구 동광길 182 | 462-2108 | 462-2101 |
| 부산장우신용협동조합 | 김진태 | 동구 초량상로 90-1 | 464-0135 | 462-0266 |
| 한국장애인연맹부산DPI | 장진순 |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504호 | 529-2688 | 782-2608 |
|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 김성대 |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482, 3층 | 365-0913 | 724-0325 |

| 부산광역시 지역 장애인협회 |

| 단체명 | 대표자 | 주소 | 전화 | 팩스 |
|-----------------|-----|-------------------------------------|----------|----------|
| 부산광역시 강서구장애인협회 | 곽도호 | 강서구 낙동북로 477, 별관102호 (강서구청) | 973-9445 | 714-1193 |
| 부산광역시 금정구장애인협회 | 이정기 | 금정구 동현로 140 | 524-4323 | 529-3144 |
| 부산광역시 기장군장애인협회 | 이순희 |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413번길 72-1 | 722-0082 | 722-2276 |
| 부산광역시 남구장애인협회 | 정찬용 | 남구 유엔평화로 45, 3층 | 622-2656 | 625-2657 |
| 부산광역시 동구장애인협회 | 김홍섭 | 동구 중앙대로 333 | 468-6189 | 466-7897 |
| 부산광역시 동래구장애인협회 | 남기정 | 동래구 총렬대로 509 | 525-0107 | 525-0108 |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장애인협회 | 한삼청 | 부산진구 전포대로255번길 15 | 894-5601 | 898-0886 |
| 부산광역시 북구장애인협회 | 이창우 | 북구 만덕대로65번길 79 | 342-7626 | 342-6872 |
| 부산광역시 사상구장애인협회 | 하태상 | 사상구 모라로192번길 2, 3층 (사상구장애인근로작업장) | 304-8627 | 302-5181 |
| 부산광역시 사하구장애인협회 | 손문화 | 사하구 다송로72번길 63, 202호 | 261-2275 | 261-2276 |
| 부산광역시 서구장애인협회 | 김양서 | 서구 보수대로154번길 20 | 243-3907 | 248-6886 |
| 부산광역시 수영구장애인협회 | 어용우 | 수영구 광남로 218-4 | 756-1595 | 757-0486 |
| 부산광역시 연제구장애인협회 | 이영숙 | 연제구 봉수로 17, 4층 (연산종합사회복지관) | 866-0214 | 866-0216 |
| 부산광역시 영도구장애인협회 | 김정애 | 영도구 동삼북로2, 주공1단지 상가 내 | 403-4032 | 405-4032 |
| 부산광역시 중구장애인협회 | 채명순 | 중구 동영로93번길 3, 1층 | 466-4126 | 468-8920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장애인협회 | 김종암 | 해운대구 해운대로570번길 8, 9층 | 731-1116 | 744-1146 |

장애인 등록 안내

장애인등록은 장애인복지정책의 기초자료이며 장애인 복지를 증진시키는 지름길이니 장애인 등록에 적극 참여합시다. 등록된 장애인은 정부 또는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복지시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 신체적 장애(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장애), 내부기관의 장애(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정신적 장애(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 등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장애 원인질환의 일정기간 치료력을 확인하여 장애가 고착되어, 의사의 진단결과 그 장애정도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 가능

▣등록시기 : 연중 ▣신청장소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등록증 종류

- 장애인등록증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복지카드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부여된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복지통합카드 : 기존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포함)에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을 통합한 카드

▣장애인 등록절차





사단법인

부산장애인총연합회

Busan Differently Abled Federation

우48821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196번길 12-3, 9층(초량동, 부산장애인종합회관)

전화 : 051) **863-0650** 장애인전화상담 : **1588-0420**

전송 : 051) **866-0651** 장애인결혼상담 : 051) **868-6004**

홈페이지 : <http://www.pjy.or.kr> E-mail : uhap12@hanmail.net